

성실의무 위반 등 특정감사 결과보고

2026. 6.



감사실

성실의무 위반 등 특정감사 결과보고

○○○○○○○에서 추진한 △△신도시 업무와 관련한 성실의무 위반 등 제보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위법여부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함.

I

감사 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신도시 내 원활한 오수처리를 위하여 ○○○○○○에서 시행한 △△신도시 ▲▲▲▲▲▲▲▲ 건설공사와 관련, 성실의무위반 등 제보사항이 있어 감사규정 시행내규 제2조 제2호에 따라 특정감사를 실시함.

○ 감사구분 및 대상

- 감사구분 : 특정감사(감사규정 시행내규 제2조 제2호)
- 감사대상 : ○○○○○○

○ 감사범위

- 대상시기 : 2024. 8. ~ 2025. 8.
- 업무범위 : △△신도시 ▲▲▲▲▲▲▲▲ 건설공사 제반업무
- 중점사항
 - 부당지시 등 규정위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신고인 및 피신고인 등 관련자 조사
 - 제보사항관련 업무처리 적정성 등 확인
 - 향후 조치계획(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26.02.12. ~ 2026.04.30.
- 감사인원 : 감사반장 및 감사반원 5명

V

감사결과

□ 감사총평

- 본 건은 2026. 2. 11. 피신고인(◇◇◇)의 성실의무위반 등 제보에 따라 실시한 특정감사임.
- 관계자 조사 및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신고인이 제기하는 피신고인의 부당한 지시 및 위법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 특정감사 결과 △△신도시 ▲▲▲▲▲▲▲ 건설공사와 관련 公社 취업규정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처분을 요구함.

□ 규정위반 및 문제점

대상	규정위반 및 문제점	관련규정	처분요구
○○○ ○○○	○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와 관련하여,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규정한 평가기한을 경과하여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음.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제12조, 제16조 및 제5조	주의
	○ '24.8. 발생한 오시공에 대하여 벌점 부과가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의견이 있음에도 시공사 및 감리단 소속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음.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통보
○○○	○ 公社에게 유리한 실정보고를 접수·처리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실정보고에 근거하여 계약기간을 연장(증 7개월)하고 계약금액을 조정(증 346백만원)하는 계약변경을 함으로써 지방계약법령에서 요구하는 계약변경 절차를 위반하였고 公社에게 재정상 손실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公社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무)	경징계
■ ■ ■	○ 公社에게 유리한 실정보고의 존재와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면서도 내부 보고나 추진방향에 대한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아 지방계약법령에서 요구하는 계약변경 절차 위반과 公社에게 재정상 손실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公社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무)	경징계
◇ ◇ ◇	○ 총괄책임자로서 ○○○과 ■■■이 지방계약법령에서 요구하는 계약변경 절차를 위반하고 公社에게 재정상 손실을 끼치는 행위에 대하여 지휘·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		훈계

□ 처분요구

○ 총괄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천원)					신분상 조치(명)			
계	시정	개선	통보	주의	계	추징	변상	환수	기타	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등
2	-	-	1	1	-	-	-	-	-	3	-	2	1

○ 목록

연번	제목	처분요구	행정상(건)	재정상(천원)	신분상(명)
1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지침 미준수	주의	1		
2	오시공 발생에 대한 부실벌점 미부과	통보	1		
3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무) 위반(기술 * 급 ○○○○)	경징계			1
4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무) 위반(기술×급 ■■■■)	경징계			1
5	지휘·감독 소홀(관리 # 급 ◇◇◇)	훈계			1

VI

행정사항

□ 감사결과심의위원회 결과

- 큰 거 : 감사규정 시행내규 제8조(감사결과심의위원회)
- 심의일자 : 2026. 6. 10.(수) 10:00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기술 * 급 ○○○○, 기술×급 ■■■■ : ‘경징계’
 - 관리 # 급 ◇◇◇ : ‘훈계’
 - ○○○○○○ : ‘주의’, ‘통보’

□ 감사결과 처분요구

- 요구사항 : 5건(주의1, 통보1, 경징계2, 훈계1)
- 조치결과 제출기한
 - 경징계, 훈계, 주의 : 처분요구 후 1개월 이내
 - 통보 : 처분요구 후 2개월 이내